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88
----------	------

제출일자 : 2024. 4. 25.

제출자 : 달성군수



## 1. 제안이유

- 가. 대구시 구·군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이 광역시 평균 판매가격보다 낮음
- 나. 청소행정 비용의 부담 증가에 따른 구·군 재정 부담 증가
- 다. 2020. 1. 1. 인상계획 연기에 따른 적용(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적용연기)

## 2. 주요내용

- 안 별표 6 수수료 인상에 따른 가격 변동분 수정

## 3. 조례안 :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4. 3. 26. ~ 4. 15.)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일자리경제과 물가대책위원회와 합의(원안동의)되었음.
- (7)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미첨부사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쓰레기봉투가격(제18조 관련)

(단위:원)

용량별(ℓ)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5	164	16	180
10	309	31	340
20	610	60	670
30	983	97	1,080
50	1,511	149	1,660
75	2,248	222	2,470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④(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⑥ (생략)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⑧~⑩(생략)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삭제(1999.1.7.)

2. 삭제(1999.1.7.)

3. 가정생활쓰레기 중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22)

4.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가정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쓰레기는 [별표6]의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9.22.)

② 제1항제4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 방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장비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1. 비용발생 관련 조문**

- 내 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안 제18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별표 6] 수수료의 인상 관련
-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구·군 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 결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수수료의 인상(변경)

**<수수료 인상 개요>**

- 근 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인 상 율

구 분	5 l	10 l	20 l	30 l	50 l	75 l	비 고
광역시 평균	196	368	720	1,195	1,778	2,658	
대구시 현행	150	290	560	850	1,400	2,080	
대구시 인상(안)	180	340	670	1,080	1,660	2,470	
인상률(%)	20.0	17.2	19.6	27.1	18.6	18.8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 개정 건은 비예산 사업
- 종량제봉투 종류와 판매량이 매년 상이한 관계로 정확한 비용 추계가 불가능

**4. 작성자 : 청소위생과 청소행정팀장 문현호**

